



UNITED STATE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미국국제종교자유위원회 (USCIRF)

미국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어떤 조직인가

미국국제종교자유위원회(U.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USCIRF)는 1998년, 국제종교자유법안(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Act, IRFA)에 따라 조직된 독립적이며 양 당이 참여하는 미국 연방정부 산하의 위원회이다. IRFA의 발효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다양한 조직들이 연합한 조직으로, 종교의 자유라는 기본적인 인권을 미 외교정책의 중심 요소로 그 중요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USCIRF는 법률에 따라 국제 표준을 바탕으로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종교나 신념의 자유에 대한 보편적인 권리를 감시하고, 대통령, 국무장관, 의회에 정책권고를 하는 역할을 한다. USCIRF 위원들은 대통령과 양 당의 의회 지도자들이 임명한다. 어느 당에도 속하지 않는 전문 직원들이 USCIRF의 역할을 지원한다. USCIRF는 국무부와 별개의 조직이지만, 국무부의 국제종교자유특임대사가 투표권이 없는 직무 상 위원 직을 맡는다.

다른 나라의 종교의 자유 실태는 어떠한가

종교의 자유는 국제법과 각종 협정에서 인정하는 중요한 인권이다.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제 18조에서는 “누구나 생각과 양심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갖는다. 이러한 권리에는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바꿀 수 있는 자유, 그리고 가르침, 실천, 예배, 의식을 행하는 데 있어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혼자 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공개적으로 또는 비공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포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종교나 신념의 자유는 생각과 양심의 자유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권리이며,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자유를 증진시키는 것은 미국의 외교정책에 있어 필요한 요소이다.

USCIRF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 **연례보고서 발행** 매년 5월 1일까지 발행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미국 정부가 어떻게 IRFA를 시행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조직적이며 지속적이고 극악한 종교의 자유 침해”를 자행하거나 용인하여 국무부장관이 “특별우려국(Countries of Particular Concern)”으로 지정해야 하는 국가를 추천한다. 또한 30여개 국의 실태를 기록하며, 종교의 자유와 관련한 중요한 추세에 대해 보고하고,

미국 정부에게 정책을 권고한다. 국제 종교자유에 관해 국무부가 발행하는 보고서와는 달리, USCIRF의 연례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정책권고가 포함된다.

- **의회와의 공조** 의회 산하 각종 위원회와의 업무 협조, 입법에 대한 조언, 청문회 증언, 종교의 자유와 관련된 사안에 대한 브리핑 개최 등을 통해 의회와 공조를 취한다. 일례로, USCIRF는 국제 종교의 자유 보호, 신성모독 금지법의 위험, 집단학살, 난민, 그리고 중국, 이집트, 이란, 시리아, 베트남 등의 국가에서 자행되는 종교의 자유 침해실태, 유럽의 반유태주의 및 반이슬람 편견, 전 세계 양심수들이 처한 역경 등의 사안에 대해 의회와 공조한다.
- **행정부와 공조**: USCIRF는 국무부 및 국토안보부 등에서 행정부 관계자들과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우려되는 상황을 강조하며, 미국 정부의 정책에 대한 권고사항을 논의한다.
- **해외 종교의 자유 실태 기록** 정부 고위관리, 비정부기구 대표, 종교 지도자, 종교 박해의 피해자, 기타 종교의 자유 옹호를 위한 이해 관계자들과 회의를 갖고, 해외의 종교의 자유 실태를 상세히 기록한다. 방문한 국가로는 아프가니스탄, 아제르바이잔, 바레인, 방글라데시, 벨라루스, 버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중국, 이집트,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 이라크,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스리랑카, 수단, 시리아, 타지키스탄,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이 있다.
- **권고사항을 담은 보고서, 보도자료, 사실, 신문/잡지 기사 발행** 여러 나라의 신성모독법 사용, 푸틴에 의한 러시아의 종교의 자유 침해 실태, 종교적 양심수, 여성의 권리 증진을 뒷받침하는 종교적 자유, 종파 간 폭력, 버마의 종교의 자유 침해 실태, 반유태주의, 긴급추방 제도에서 나타나는 미국 정부의 망명 신청자 처우방식 등에 대한 주제를 다룬다.
- **다자간 협력** 유엔, 유럽안보협력기구(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OSCE), 유럽연합, 종교나신념의자유를위한국제의원패널(International Panel of Parliamentarians for Freedom for Religion or Belief, IPP-FoRB) 등에서 종교의 자유 및 관용에 관한 협의를 통해 다자간 협력을 모색한다.